



제 202000830 호

형 식 승 인 서

신청인 성 명 : 윤철구
상 호 : (주)서한에프앤씨
사업장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샛강영길 5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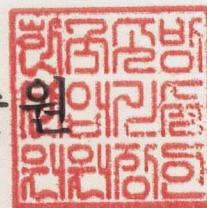
소방시설설치·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·제37조제1항
및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·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
아래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합니다.

1. 품 명 완강기지지대
2. 형 식 간이완강기용, 내벽 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
3. 형식승인번호 지지20-2
4. 조 건
5. 비 고

2020 년 07 월 28 일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


검 사 성 적 서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& Technology

446-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: 031-289-2985, Fax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000830

페이지 : (1) / (총 2)

1. 신 청 인

☒ 원 본 ☐ 재발급

- 업체명 : (주)서한에프앤씨
- 주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샛강영길 59
-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2000315호 2020. 06. 26.

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
3. 검사대상 종별(품명) : 완강기지지대

4. 검사기간 : 2020. 06. 26. ~ 2020. 07. 28.

5. 검사방법 :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
7. 검사환경

- 온 도 : (20.7 ± 5.0) °C, 습도 : (45 ± 7)% R.H.

8. 검사결과 : 합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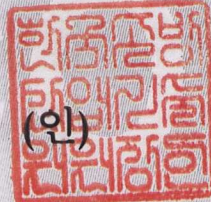
※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 페이지 참조)

확 인	실 무 자	기술책임자
	성 명 : 추 광 래	성 명 : 정 환 필

위 성적서는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20년 07월 28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(인)



- 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
[첨부]

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& Technology		성적서 번호 : 202000830	
446-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: 031-289-2985, Fax: 031-287-9066		페이지 : (2) / (총 2)	
형 식 시 험 결 과			
업체명	(주)서한에프앤씨	형식승인번호	지지20-2
품 명	완강기지지대	형 식	간이완강기용, 내벽 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
		시 험 항 목	결 과
조 항	항 목	기 준	시료 (개) 검사결과 판정 비고
제16조	지지대의 구조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	5 적 합 합격
제17조	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	최대사용하중이 1 500 N 이상의 하중인지 여부	2 적 합 합격
		최대사용자수(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함)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(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함)으로 함	2 적 합 합격
제18조	재료	지지대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비내식성 재료일 경우 내식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벽부착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(KS D 3698)를 사용하는지 여부	1 적 합 rowspan="2">합격
		지지대 내식가공의 확인은 염수분무시험방법(중성,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(KS D 9502))에 의하여 5회 (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,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) 시험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	1 적 합
제19조	강도시험	지지대는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는지 여부	2 적 합 합격
제20조	충격시험	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,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.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여부	2 적 합 합격
제21조	표시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	5 적 합 합격

“끝”